

- 2025년 울산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-

# 2025 콘텐츠 예비 창업 원스톱 패키지 모집공고

(재)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역 내 예비창업자 육성을 통한 문화콘텐츠 아이템 발굴 및 지역 콘텐츠 창업 생태계 초석 마련을 위한 '2025 콘텐츠 예비 창업 원스톱 패키지' 사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유망한 콘텐츠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. 6.

(재)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

## 1 사업개요

### □ 사업목적

- 콘텐츠 산업 분야 창업자 발굴 및 교육, 멘토링, 사업화 지원을 통한 콘텐츠 창작에서 창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및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

### □ 공모개요

- 공 모 명 : 2025 콘텐츠 예비 창업 원스톱 패키지
-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~ 11. 15.(예정)
- 지원대상 : 신청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(개인, 법인) 이력이 없는 예비 창업자(팀) ※ 콘텐츠분야 한정
- 모집규모 : 총 10명(팀)
- 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(350만원), 창업교육, 팀별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 등

## □ 지원분야

○ 지원분야 : 게임(온라인 게임)을 제외한 콘텐츠 전 장르

- ※ 콘텐츠 장르(예시) : 음악, 방송영상, 웹툰, 캐릭터, 애니메이션, 에듀 테인먼트, 크리에이터, 콘텐츠솔루션, 디지털문화콘텐츠, 실감콘텐츠 (VR·AR, 홀로그램, 프로젝션 맵핑 등)
- ※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(정의) 준용
- ※ 제외사업 : 영화(영화진흥위원회), 출판(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), 디자인 (한국디자인진흥원), 공연 등 문화예술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등

## □ 지원자격

○ 지원대상

- 신청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(개인, 법인) 이력이 없는 예비 창업자(팀)

- 이종업종 창업 가능(단, 명백하게 이종업종임이 구분되어야 함)

※ 비콘텐츠업 → 콘텐츠업(지원가능), 콘텐츠업 → 콘텐츠업(지원불가)

※ 콘텐츠업 :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(정의)에 의한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

(예시) 부동산업, 숙박업, 음식점업 등 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(개인사업자)은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제2조(정의)에 의한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가능

※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판단

- 폐업자로 지원가능

※ 사업자등록변경내역서, 총사업자등록내역서, 폐업자 업종 등 정보내역서, 사업자등록 사실여부확인서 등 제출 필수

○ 지원제한 ※ 하기 내용 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제외

- 신청 마감일 기준 사업체를 보유한 자(팀) ※콘텐츠 분야

- 신청일 기준 지원자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

※ 단,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 제외
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- 공고일 기준 참여인력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제재조치, 의무사항 불이행, 참여제한 중인 경우

-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

감호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

-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사업화 자금을 받은 자
-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본 기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
- 동 사업의 사업화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※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

※ 허위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,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 시행

## □ 지원내역

- 해당 사업은 예비 창업자의 성장과 안착을 돕는 2개년도 프로젝트이며, 최종평가를 통하여 2026년 2단계 창업지원으로 연계

구분	1단계	⇒	2단계
지원연도	2025년	⇒	2026년
지원내용	(예비) 창업자 지원		초기 창업자 지원

### 1) 사업화 지원

- 사업화 지원금 : 3,500,000원(부가세 포함)
  - ※ 사용범위 :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자문 비용 등
  - ※ 사용제한 : 10만원 이상 자산성 소모품·비품·기자재 구입, 여비, 회의비 등
- 운영사를 통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, 중간점검 기준 1, 2차 분할 지급

### 2) 창업교육(필수)

- 교육기간 : '25. 8월 중(토, 일)
- 교육시간 : 총 24시간(6시간x4과정)
- 교육장소 : 울산콘텐츠코리아랩 교육장
- 교육내용 : 사업기획, 콘텐츠 브랜딩 및 마케팅, 투자유치 등
- 수료기준 : 출석율 80% 이상
  - ※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
  - ※ 교육과정 및 일정은 변동 가능성 있음

### 3) 콘텐츠 창업 컨설팅(필수)

- 운영기간 : '25. 7월 ~ 10월 중(예정)
- 운영횟수 : 총 30회(3회x10팀)
- 운영방법 : 1:1 또는 그룹형 컨설팅(3회 이상)

#### 4) 콘텐츠 창업 네트워킹 데이

- 운영기간 : '25. 10월 중(예정)
- 주요내용 : 울산 콘텐츠 창업 프로그램 참가기업 성과교류(예비 및 초기 창업자), 콘텐츠 창업 우수사례 발표, 네트워킹 등  
※ 해당 프로그램은 운영사의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

#### 5) 2단계 창업지원 프로그램

- 최종평가 우수기업(점수 90점 이상)대상 2026년 콘텐츠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우선지원

### □ 수행기관의 역할 및 책임

#### ○ 과제수행

구분	상세내용
협약기간 (과제수행기간)	- 협약일 ~ 2025. 11. 15.까지 ※ 변동 가능성 있음
과제 결과물	- 해당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콘텐츠 분야 결과물 1식 도출(필수) - 지정일까지 결과 및 정산보고서 각 1부, 성과물 결과 증빙 제출 ※ 협약 종료 후 10일 이내
사업자등록	※ 선정 후 울산광역시 내 콘텐츠 관련 업태,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('25. 07. 31.까지) (필수) - 사업자 등록 이후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 유지 1년 이상
사업비 관리	- 사업화 자금은 콘텐츠 아이템 결과물 개발 제작에 집중한 자금 사용과 공간 활용 등 올바른 활용 필수 - 사업화 자금 사용 전반의 보조금 법령 등 제반 법령, 규정 준수 - 미집행 보조금 및 사용지침 미준수 시 해당 금액 반납 - 사업화 자금은 협약체결 이후 2회에 걸쳐 지급하며, 필수 사업성과 및 필수과정 불참으로 인한 점검·평가점수 미달 시 사업화 자금 전액 환수 조치 가능 ※ 교육 이수율 및 프로그램 참여율은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 시 반영 혹은 가산점 부여
결과물의 귀속	- 과제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저작권, 판권, 보고서 등 지식재산권 귀속은 수행기업이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- 단,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콘텐츠진흥원, 울산광역시,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 제공 하여야 하고, 진흥원에서 사업 전·후 5년 간 매출액, 고용 창출 등 실적 관련 정보 요청 시 반드시 요청 기간 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
기타	- 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사업 결과물을 활용한 홍보 활동(SNS, 지면, 보도자료 등) 동의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울산정보산업진흥원(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)이 주관하는 홍보 활동 협조(사진 제공, 인터뷰 참여 등)</li> <li>- 울산정보산업진흥원(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) 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(만족도 조사, 성과조사 등)</li> <li>- 기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자료 제공</li> <li>-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체결, 교육, 컨설팅 등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프로그램 참여</li> <li>- 지원사업 참여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하며, 유사 또는 동일한 과제로 진흥원 및 타 기관의 지원사실이 없어야 함</li> <li>-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성평등센터 BORA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수강 후 수료증 발급 및 제출</li> <li>※ ('21.1.6.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)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</li> <li>※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: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, 민간 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,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</li> </ul>
--	---

## □ 지원금 사용 안내사항

### ○ 지원금 지급 및 사용

- 운영사를 통한 간접지원
- 선정과제에 한하여 지원금 2회 분할 지급(1차-200만원, 2차-150만원)

구분	중간점검 점수	2차 지원금 지급	비고
합격	70점 이상	2차 지원금 지급(30%)	과제 지속수행
불량	70점 미만	보완계획 수립 및 재평가	재평가 후 (합격) 과제 지속수행 (불량)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

### - 운영사를 통한 지원금 관리

- 부적절 사용내역 평가 시 반영
- 지원금 사용 시 관련 증빙서류 붙임 문서에 필수 첨부
- 운영사를 통한 회계 검증

### - 사업비 집행 : 콘텐츠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비용

#### [일반수용비]

1. 사무용품 구입비
  - 필기용구,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
  - 구매단가 10만원 이상 비소모성 물품은 자산취득으로 인정되어 구매불가
2. 인쇄비 및 유인비
  -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 양식,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
3. 안내·홍보물 제작비
  - 현수막,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물 물품의 제작비
  - 간판, 명패, 감사패, 상패 등의 제작비
4. 수수료 및 사용료
  - 검정료, 감정료, 시험료, 제증명 발급비용, 원가산정비 및 조달수수료, 보증보험증권

발행 수수료, 면접비(응시자)

- 물품의 보관·운송료, 고속도로통행료, 주차 및 차고료,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, 상하차비, 선적·하역비. 단, 철도화물운송료는 공공요금및제세(210-02)목에 계상
- 국내외 전시회, 세미나, 학회 및 컨퍼런스 참가비
- 퀵서비스료, 택배비 등 \*우체국 택배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(210-02)에 계상
- 공용 소프트웨어 사용료(구독료)

5. 전문가활용비

-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
- 국내 전문가 자문료, 강사료, 원고료, 각종위원회 수당  
\* 전문가활용비에는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되어 있음.  
단, 원격지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(전문가활용비 활용하여) 추가지급 가능
- 교육훈련시 초빙강사료

6. 공공요금 및 제세

- 우편요금

[임차료]

1. 임차료 ※ 임차운영계획 필첨

-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
- 버스·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
- 노트북, PC 등의 전산장비 임차료

[일반용역비]

1. 일반용역비 ※ 운영용역계획서 필첨

-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, 채용,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

· 제한범위 : 인건비, 업무추진비, 국내·외 여비, 자산취득비 등 ※ 기재된 비·세목으로 제한

## - 사업비 사용

- 운영사를 통한 사업비 이체 등
-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비용은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,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

## - 사업비 정산

- 운영사를 통해 사업비 사용 실적 및 세부 집행 내역의 타당성 검토
- 사업비 집행 내역과 회계 장부의 일치 여부, 통장 인출의 투명성, 관련 증빙의 적격성 등 세부 내용 검토
-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에 의해 부적정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될 수 있음

## □ 공고 및 신청기간

- 공고기간 : 2025. 6. 19.(목) ~ 7. 3.(목), 16:00까지
- 신청기간 : 2025. 6. 19.(목) ~ 7. 3.(목), 16:00까지

-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1일 전까지 '울산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누리집 가입 및 신청'을 미리하는 것을 권장함
- 신청·접수는 16:00 정각에 종료. 제출시각이 16:00 이후로 확인되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
-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 및 삭제 불가

## □ 신청방법

- 신청방법 :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접수  
(<https://www.ucepc.or.kr>)
- 신청·접수 시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누리집 본인인증 필요
  - ※ 사업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((예비)창업자)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,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책임자(PM)이 직접 신청, 타인이 신청 시 위임장 제출 필수. 미제출 시 탈락 처리

## □ 제출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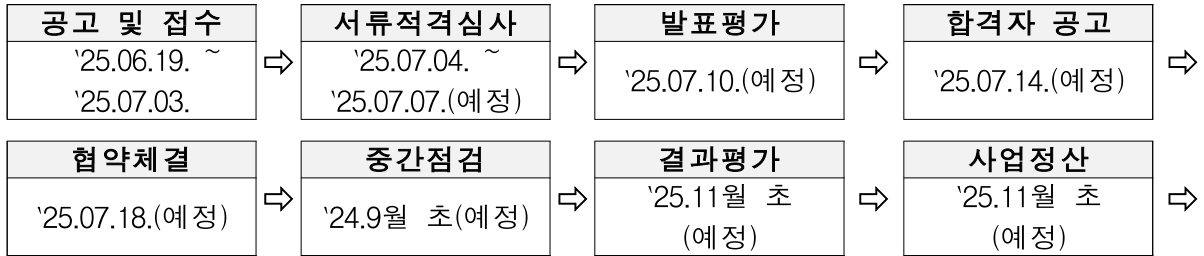
- 제출서류 : 신청 양식을 진흥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 
([https://www.uipa.or.kr/webuser/business/list.html?sch\\_bd\\_category=2](https://www.uipa.or.kr/webuser/business/list.html?sch_bd_category=2))

폴더명	구분	제출서류	비고
[폴더명] 1.과제신청서	1	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별지 제1호 서식)	필수
	2	청렴이행각서(별지 제2호 서식)	
	3	중복 지원 금지 협약서(별지 제3호 서식)	
	4	개인정보동의서(별지 제4호 서식)	
	5	사업자등록사실여부(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) ※ 폐업자의 경우 총 사업 등록내역, 폐업사실증명원 ※ 25.1.1.이후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변경내역서, 총사업자등록내역서, 폐업자업종등정보내역서 제출	
	6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
	7	발표자료(PPT 및 PDF) 10분 내외	
[폴더명] 2. 증빙서류 및 서약서	8	사업자등록증 사본	해당 시
	9	4대보험 납입증명서 및 가입자명부	
[폴더] 3. 기타서류	10~	선택제출서류 (필수 증빙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포함)	해당 시
• 위 1~10번까지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<b>2중(개별버전, 통합버전)</b> 의 파일로 제출 ① 개별버전: <b>폴더명 1~3번 각 제출서류를 해당 폴더 안에 순서에 맞춰 hwp 파일로 저장 및 제출</b> ② 통합버전: <b>모든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</b> • 제출파일명: ① “[예비창업지원]_성명.zip”, ② “[예비창업지원]_성명.pdf” •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• 용량이 초과하여 첨부파일이 업로드가 되지 않을 경우 이메일 별도 접수 가능( <a href="mailto:ucepc@uipa.or.kr">ucepc@uipa.or.kr</a> ). 단, 홈페이지 신청접수는 완료하여야 함			
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에 한해 인정하며,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※ 최종 사업선정 후 <b>선정자에 한해 원본 서류 제출 요청 예정</b>			

## 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### □ 선정절차

#### ○ 선정절차 안내(안)



※ 1배수 미만 신청 시 공모 기간 연장 가능성 있음

### □ 평가기준

#### ○ 평가방법 : 발표평가(100)

- 서면심사(적격심사),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 선정

- 1차 서면심사(서류적격 심사)
  - 제출서류 적합성 확인, 관련 규정에 따른 기 지원 여부, 참여제한 여부, 필수 제출 자료 제출 여부(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) 확인
- 2차 발표평가 및 최종 선정
  -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경우 발표평가 통과/ 사업비 조정 등 종합심의 절차를 통해 발표평가 기준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(후순위 과제 포함 가능)
    - ※ 종합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사업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할 수 있으며, 재공고 할 수 있음

#### ○ 발표평가 ※ 과제별 발표날짜, 시간은 별도 안내 예정

- 서면심사를 통과한 과제 대상 전문심사위원을 통한 대면평가(발표 및 질의)
- 발표평가는 서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
  - ※ 발표자료(PPT, 자유양식) 사전 준비 필요(10분 내외)
-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절차에 따라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

#### ○ 평가지표

평가항목	내용	배점
문제인식(40)	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(문제인식), 해결방안(필요성)	20
	창업 아이템과 콘텐츠 분야와의 적합성	20
아이디어 기획력(30)	아이디어 기획 구상에 맞는 전략과 추진방법	15
	사업계획의 구체성, 기간 내 추진 가능성	15
사업화 가능성(20)	사업목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,경쟁력 확보 방안 등	10
	창업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, 자금조달 방안 등	10
팀(기업)구성(10)	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(예정인) 기술역량과 노하우	10
<b>합계</b>		<b>100</b>

- 본 사업은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(한국콘텐츠진흥원)」, 「콘텐츠 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(한국콘텐츠진흥원)」, 「콘텐츠 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」,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지침(울산정보산업진흥원)」등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,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
  - ※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, 규정, 지침에 따름
-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, 지원금 회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제출된 신청서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  - ※ 단, 상세정보를 요구하는 우리원의 요청에 따른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
- 선정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
-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참여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, 선정 이후에도 허위정보 확인 시 선정결과를 무효화 할 수 있음(기지급 지원비 전액 반납)
- 선정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
- 제출의 방법과 서류상의 누락 혹은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원은 통보하지 않으며, 이에 발생한 불이익은 제출기업에 있음
- 신청과제는 우리원 사업과 과제 등의 홍보를 위한 언론홍보와 공식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
- 선정 이후 협약서 「성과관리」조항에 의거, 신청일 현재 과거 3년 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
-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,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- ①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(미제출)한 서류가 있는 경우
  - ② 날인(서명) 필요 서류에 날인(서명) 없이 제출했을 경우
  - ③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
  - ④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
  - ⑤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등

-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정책을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·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등 성희롱·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
  -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
  - 민간보조사업 수행단계에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, 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 상담 통합센터를 이용
    - ※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-5678(1번), 홈페이지 <http://bora.kocca.kr>
- 사업 선정·수행 등과 관련된 평가의 발표는 과제 책임자 이상이 진행하여야 함
-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울산시, 울산정보산업진흥원,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제휴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
-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(유용, 횡령 등) 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,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
-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최근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, 우리원에서 진행하는 성과조사에 실적제출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함
- 상기 공고 내용을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2025. 6. 19.

**(재)울산정보산업진흥원**

## [ 사업비 편성 지침 ]

### 1. 사업비 집행의 원칙

#### 가. 목적 적합성 및 합리성

-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출만을 정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관련성이 없는 경우 불인정
- 목적 적합성은 협약서상 비목별 소요명세서에 기재여부, 집행사유의 적합성에 따라 판단
- 과도한 물량, 과도한 단가의 물품 구매 및 서비스 구매 금지

#### 나. 지급수단 : 계좌이체

- 현금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

#### 다. 집행기간

- 사업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 사이에 원인행위가 발생되고 집행된 내역만 인정
- 사업기간 개시일 이전, 종료일 이후에 귀속되는 지출의 경우 사업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라도 인정되지 않음(예, 사업기간 개시일 이전분 인건비를 사업기간 중 집행한 경우 불인정)
- 단, 거래 행위의 특성상 대금의 지급이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(다만, 원인행위는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)

#### 라. 부가가치세

-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경우 :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
-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: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(공급가액+부가가치세) 상당액을 집행액으로 인정
- ※ 면세영리사업자(출판사 등) : 출판(면세)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되, 과세관련 사업의 경우(예, 캐릭터 상품의 제작, 비도서류의 제작 등)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급가액을 집행액으로 함
- ※ 일반과세사업자 : 매입세액 공제신청이 가능하므로 공급가액을 집행액으로 함

#### 마. 원천세
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사업비의 경우 원천세 공제 전 금액을 집행액으로 함(원천세는 사업기관이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에 납부)

#### 바. 규정준수

- 사업비 통장에 의한 사업비 관리 의무
- 각 사업기관의 규정에 의해 집행하되 규정이 없는 경우 진흥원의 규정을 준용

## 2. 목·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(산정 및 정산기준 포함)

목	세목	세세목	내역
운영비	일반수용비	사무용품 구입비	- 필기용구,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 구입비 - 구매단가 10만원 이상 비소모성 물품은 자산취득으로 인정되어 구매 불가
		인쇄비 및 유인비	-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명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 인쇄물 및 유인비 - 현수막,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 물품 제작비 - 홍보물 제작 시 협약기간 내 소진하여야 하며, 수령자 명단 필수 증빙 - 사업 수행을 위한 직접 관련된 홍보용도여야 하며,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불가
		전문가 활용비	- 각종 컨설팅, 자문 수당 등 - 총 2회 이내, 자문서 제출 필수
		지급 수수료	- 국내 전시 참가, 세무기장비 등 수수료 일체 - 국내 전시 참가 등록비, 부스임차비 등 - 법인설립 법무수수료 - 세무기장 수수료 등
		산정 및 정산기준	-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-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-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
		증빙서류	- 지출기안 - 전자세금계산서, 견적서, 납품서 및 납품사진, 이체영수증 등 - (전문가활용비) 원천징수영수증, 자문서, 이체영수증 등
	재료비	재료 구입비	- 결과물 제작에 필요한 직/간접 재료 구입비 -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 수량 구매 가능
		산정 및 정산기준	-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-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-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
		증빙서류	- 지출기안 - 전자세금계산서, 견적서, 납품서 및 납품사진, 이체영수증 등 - (전문가활용비) 원천징수영수증, 자문서, 이체영수증 등
	일반용역비	일반 용역비	-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, 시제품 제작,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※ 운영용역계획서 필첨
		산정 및 정산기준	-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-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-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- 용역 예약 시 일정금액 이상 시 조달청 입찰 필수 <입찰조건> 일반기업 : 2천만원 이상(부가세 포함 2.2천만원)인 경우 여성, 소상공인, 사회적 기업 등과 계약 : 5천만원 이상(부가세 포함 5.5천만원)인 경우
		증빙서류	- 지출기안 - 위탁용역 계약서 -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(2부), 전자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 - 위탁용역 결과보고서(완료계, 납품서 등) - 이행보증보험증권(해당 시) - 수의계약사유서 및 증빙서류 - 이체영수증

【별첨 2】 불인정 사항

### 공통사항

- 협약 기간 이전 또는 협약 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
-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
-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
-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
-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
-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해당 금액
-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
- 수행기업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, 인적·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
- 전담기업 또는 위탁정산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한 경우

목	세목	내용
인건비	보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참여 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</li> <li>● 개인별 참여율 100%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 그 차액</li> </ul>
	상용임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참여 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</li> </ul>
운영비	일반 수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신문구독료, 세차비, 차량 정비 및 보험료, 피복비, 주유비, 범칙금,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업운영비 성격의 경비</li> </ul>
	임차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</li> <li>● 내부보유 장비·시설·공간에 대한 임차료</li> </ul>
여비	국내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처리 시 신청 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 한 경우</li> <li>● 국내 출장(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)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</li> </ul>
업무 추진비	사업 추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회의목적, 회의일시, 참석자,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</li> </ul> </li> <li>●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</li> <li>● 외부기업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업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</li> </ul>

### 【별첨 2-1】 e나라도움 A시스템 부정징후 탐지 관련

- e나라도움 A시스템 부정징후 의심이 탐지되었을 경우, 별도 소명을 통해 '부정징후 의심/과오집행/부정징후 아님'을 판단 ※ 추후 기재부 현장실사가 있을 수 있음
- 부정징후 탐지 관련 대표 사례 안내
  - 세금계산서 분할 거래 의심 탐지
  - 가족 간 거래 의심 탐지
  - 허위인력 인건비 지급 의심 사례
  - 보조사업자의 임직원(직계존비속 포함) 등이 운영하는 업체/단체와의 거래
  - 부정사례 학습을 통한 의심사업 도출 등
- **부정수급건은 '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'에 의거 모두 불인정 예정**

### 【별첨 3】 콘텐츠 금융제도 안내

##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제도 이용방법 안내

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<콘텐츠금융제도>를 운영합니다. 콘텐츠가치평가 연계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, 콘텐츠기업 융자 지원(▲콘텐츠기업보증, ▲콘텐츠IP보증, ▲K콘텐츠혁신성장보증, ▲문화산업완성보증),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등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### □ 콘텐츠금융제도

구분	대상자격	내용	지원규모	
콘텐츠가치평가	국내 콘텐츠기업	가치평가모형으로 콘텐츠를 평가, 투자사 추천을 통해 투자유치 지원	투자연계	
콘텐츠특화보증	문화콘텐츠기업보증	콘텐츠 기획·제작·사업화 단계 등 사업단계별 소요자금 지원	(기획) 최대 3억원 (제작) 최대 5억원 (사업화) 최대 10억원	
	콘텐츠IP보증	국내 콘텐츠IP 활용기업 (콘텐츠기업 및 이종기업)	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 지원	10억원 내외
	K콘텐츠혁신성장보증	국내 콘텐츠기업	K콘텐츠혁신성장*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* 글로벌/비대면/신기술융합형 콘텐츠 제작 및 유통	최대 10억원
문화산업완성보증	국내 콘텐츠기업	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콘텐츠 제작자금 지원	프로젝트별 15억원 내외	
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	독립제작사 및 케이블PP	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시설구축 저리 융자지원	프로젝트별 15억원 내외	
콘텐츠피칭플랫폼 KNOCK	진흥원 주요사업 참가기업	투자유치를 위한 IR교육, 피칭행사, 투자매칭 제공	투자연계	

### 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월 ~ 11월 \* 금융제도별 세부 신청기간은 해당 공고문 참고
- 사전 신청방법 : 사전 신청서 작성(<https://www.kocca.kr/cgp/lbs/list/E0158960.cb?menuNo=203897>)
  - ▶ 이메일로 송부([assess@kocca.kr](mailto:assess@kocca.kr)) ▶ 상담전화 통해 신청 안내
- 신청방법 : ①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(<https://www.kocca.kr>) 알림마당 ▶ 금융지원 ▶ 해당 사업공고 내 신청서 등 다운로드 및 작성, ② 콘텐츠가치평가센터 홈페이지(<https://assess.kocca.kr>) 기업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업로드(※ 신청 전 사전상담 필수)



### □ 문의방법

- 콘텐츠가치평가센터 홈페이지 FAQ 및 1:1 문의 이용
- 문의처 : 02-6441-3658, [assess@kocca.kr](mailto:assess@kocca.kr)